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2004

나. 연금지급형태에 관한 사항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10년, 20년보증지급(정액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Y)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 까지

나.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Y)	보험료 납입주기
5년	0세 ~ (Y- 5)세	만55세 ~ 80세	월납
10년	0세 ~ (Y-10)세		
15년	0세 ~ (Y-15)세		
20년	0세 ~ (Y-20)세		
전기납	0세 ~ (Y- 5)세 (다만, 가입나이 (Y-9세)에서 (Y-6세) 는 가입불가)		

다만, 만55세 연금개시를 선택한 경우 55세 계약해당일에 만55세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만55세가 되는 날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으로 하며, 55세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개시전일까지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 적립방식에 따라 적립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 보험연도말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나. 배당금의 지급방법

‘가’ 항에 따라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 (1) 계약소멸할 때에 보험금 등에 더하여 지급한다.
- (2) 연금개시일 1년전 계약해당일까지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시 증액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매년 연금지급을 할 때 가산연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금개시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1)’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가입한도
5년	5년	매월 5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6년	매월 15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7년이상	
10년	10년이상	
15년	15년이상	매월 12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20년	20년이상	
전기납		

다만, 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연금저축추가납입특약 이외의 특약의 보험료는 연간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가.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제외하고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 보험료는 월계약 해당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 (\beta 1)$$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text{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 (\beta 2)$$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beta 3)$$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 (\beta 4)$$

-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는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 (\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 (\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 (\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 } (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 } (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 } (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 } (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 (라)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헛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 (\alpha) = \frac{A/B + C}{A + 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1-\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 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한다.
-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마.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총 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14.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다음 (1) 또는 (2)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개인형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함)
- 나. 계약자가 ‘가’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다. ‘가’ 및 ‘나’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 라.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한다.
-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연금계좌의 1명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 (3) 암류, 가암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암류, 가암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특약 포함)
- (5)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마.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다.

15.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1)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연금 저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운용한다.

(2)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대상 적립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보험업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평가한다.

다.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납입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 마지막 날까지, 16일부터 월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 마지막 날까지, 16일부터 월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보험금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해지환급금 또는 책임준비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3) '(1)' 및 '(2)'에 있어서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평균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6.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한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한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한다.
- 나. ‘가’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로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다. ‘나’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된다. 다만, 납입유예로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다.
- 라. 납입유예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사’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한다.
- 마.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매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바.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사.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책임준비금에서 공

제한다.

17. 의료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의료비인출」이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의료비인출은 연금 개시 이후 가능하며,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및 연금외수령으로 일시에 인출할 때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 다.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타

- 가.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료 × 12 × Min{납입기간, 10}』으로 한다.
- 나. 연금지급형태의 복수선택
- (1)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 (2) '(1)'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의 보험기간은 복수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 (3) '(1)'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신청한 연금지급형태별 구성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연액을 계산하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 다.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저 보증에 관한 사항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한도로 한다.

- 라.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연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 마.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바.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및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아.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